

# 청 와 대 민 원

제목 : 진실을 밝혀주세요.

민원인 :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년 2월27일 접수(1BA-1702-154903)되어 법원행정처(대법원)(으)로 이송된 민원. 답변을 3월14일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아 다시 6번째 민원 합니다.

## 민원 요약

1. 증거 묵살하여 판결 했습니다.

의사진단서 회사사규도 인정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판결문 인정 증거호수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증거 호수가 판결문 채택 증거에 있고 배척증거에도 있습니다. 모순되고 잘 못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했습니다.

☞ 그동안 KT(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사건은 대법원 기각 확정판결만 12번. KT노동조합사건 대법원 기각 확정판결만 5번

○.KT사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93 접수됨

○.KT노동조합사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905 접수됨

## 2. 조합원의 알 수 있는 권리를 묵살했습니다.

5대 노동조합 때 1994년쯤 노동조합 규정에 신분보장제도가 생기고 부터는 잦은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들이 대량해고 되었다가 복직되고 했습니다. 갑 17호증(서울고등법원 2016재나905)은 1995년 5대때 불법 파업 집회 한 노조간부님들 명단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95년 5대 때만) 6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고, 7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습니다. (5,6대는 불법 집회로. 7대는 명동성당 불법 파업집회로.) 어떤 분들은 해고됐다가 복직되고도 또 불법 파업 집회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을 근거로 소송비용 및 복직 될 때까지 근무자와 동일한 월급에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10년 넘게 혜택보고 복직한 분들도 여러 분 됩니다.

제가 8대 노동조합이 생긴 2003년에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사건으로 부당해고 되어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에 대하여 문의하니 노조간부님들은 파업집회하다 피해당한 것만 조합 활동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게시판에도 항의했는데 답변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노동조합게시판 4장참고)

○.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2007가합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 행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시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2조)권리를 묵살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판례문헌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이 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밝힐 수 없게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조)

####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3. 판사가 아닌 분이 재판했습니다.

2004년4월30일은 그 당시 높으신 분 문재인님(지금은 대통령후보)이 재판장님 이었습니다. 법관 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을 강조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 맺음

#### 법원조직법

#### 제9조(사법행정사무)

-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제9조(사법행정사무)”를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주장합니다.

- .로스쿨출신 판사님들에게 재판 받게 해주세요.
  - .법률에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를 찾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재인님(지금은 대통령후보)이 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판을 하셨고 판결문에는 다른 분의 이름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 ☞. 대법원장님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여러 번 처리해주셔서 정부에 감사한 맘입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봐 주셨으면 하는 맘입니다.

※.참고

<http://www.ilovekt.org> 이곳 인터넷주소 '현장의 목소리' 게시판에 그동안 닉네임 '그루' 로 소송내용 및 민원내용을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뒷면 첨부(참고자료)

- ①.법원행정처 답변(1BA-1702-154903)1장.
- ②.갑17호증1장.(서울고등법원 2016재나905 증거호증)
- ③.갑 4호증1장.(서울고등법원 2016재나905 증거호증)
- ④.노동조합게시판 4장.

2017년 3월 일 임그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귀하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 법원행정처

수신자 임그루(3632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다세대주택A 동 103호)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그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2. 27. 신청번호 : 1BA-1702-15490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확정된 본인의 각 행정사건(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2006재누171)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할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판사무국장



법원주사보      안상기      법원사무관      이건웅      과장      방웅석      국장      03/08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2200      ( 2017.03.08. )      접수      (      )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3      /전송 02)536-0296      / @scourt.go.kr      / 공개

# 청사출입 통제자 명단

■ 집행유예 이상 16명(청사출입 불가)

550-373



**장 현 일**  
징역 1년  
집유 2년  
대법 96. 06. 14



**유 덕 상**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대법 96. 05. 10



**양 한 응**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대법 96. 04. 12



**도 남 희**  
징역 1년  
집유 2년  
대법 96. 06. 14



**박 수 호**  
징역 1년  
집유 2년  
대법 96. 04. 26



**박 철 건**  
징역 1년  
집유 2년  
고법 96. 08. 28



**이 정 환**  
징역 8월  
집유 1년  
대법 96. 06. 11



**김 형 만**  
징역 10월  
집유 2년  
고법 96. 08. 28



**유 상 학**  
징역 10월  
집유 2년  
고법 96. 08. 28



**심 철 식**  
징역 10월  
집유 2년  
대법 96. 06. 14



**김 중 근**  
징역 1년  
집유 2년  
대법 96. 06. 14



**김 용 광**  
징역 8월  
집유 1년  
대법 96. 04. 26



**정 홍 곤**  
징역 1년  
집유 2년  
대법 96. 04. 26



**김 규 화**  
징역 8월  
집유 1년  
대법 96. 04. 23



**노 춘 석**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고법 96. 08. 28



**김 중 석**  
징역 10월  
집유 2년  
고법 96. 02. 29

■ 벌금형 8명(청사출입 목적 합당시 일반방문객 출입 절차에 의거 노조사무실 허용)



**박 호**  
벌금 150만원



**이 해 관**  
벌금 150만원



**이 재 숙**  
벌금 150만원



**류 방 상**  
벌금 150만원



**김 세 옥**  
벌금 150만원



**박 재 통**  
벌금 100만원



**정 용 철**  
벌금 150만원



**현 경 통**  
벌금 150만원

# K T 노동조합

우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4821 FAX 031)727-4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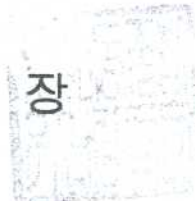
문서번호 사무 제 204호 시행일자 2006.08.03 경 유 수 신 임그루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결 재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신분보장 기금청구서 반려

1. 항상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귀하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신분보장기금 청구서(2006. 6.26.) 관련
3. 위 관련 검토한 결과 조합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무단결근, 무단의출 무단조퇴 등으로 인한 해임된 사항에 대한 건은 신분보장기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내용은 잘못됐음을  
 2006년 7.26일이 맞음

K T 노 동 조 합 위 원 장



### 열린게시판

**제목** 해명하라.

**작성자** 그루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최소한 사규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조합활동에 해당된다.  
이런 목적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책임져야지

너희들 이내용 해명하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무조건 어거지로  
아니라고 하지마라  
또 지우지도 마라

정당하면 승복한다.

강제  
19-5  
조중  
2강

2139    해명하라.  
          →막혀도 한창 막혔다

그루     2005-07-14    272  
참민주   2005-07-14    151

인쇄



**열린게시판**

**제목** 이성하다??  
**작성자** 임격정

**E-MAIL**

여보시오 그루님!!  
당신 왜 꼰쳤소?

좋은 사람은 이 사이트에 못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감?  
회원등록 할 때 사원번호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되는건데?

그루  
재발 받을 상대로 싸우쇼..  
노동조합은 그루님 미처광이 놓음편 편은 대주는 조직이  
아니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주관적 상식이 KT노동조합의 규약,규정과  
조합원의 정서에 전혀 수용되지 않아요.

파업할 때, 노동조합이 조직동원할 때, 위원장의 투쟁영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등만 구제대상이라는 걸 모르나?

왜 어거지로 노동조합 총파를 오염시키고 조합원들 파곤하게 하나?

요새 "인터넷 거만을 벗지"는 공익광고가 있는데  
기분같으면 은곳 10원짜리 옥을 따부으면 좋겠지만 참소이다...

지금 희생자구제해주면 나중에 승소하고 환불하겠다고??  
허이그.....  
논,말,잡 팔아서 소송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다시 사들이시지....

3725	해명하라.	그루	2005-12-05	807
	→이성하다??	임격정	2005-12-05	232
	→귀신은 뭐하는지?	저승사자1	2005-12-05	335
	→타당하게 설명하라 어거지로 하지말고...	그루	2005-12-05	279



## 열린게시판

**제목** 해고자 지원책 적용 위한 결의문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작성자** 조합원

**작성일**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회사에서 해고한 노동자를 노동조합에서 재차 해고하겠다는 한마디로 확산사살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만명의 임금, 복지, 고용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지난 5대 유목상 민주집행부의 출현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목상 민주집행부 경험없이 저희 조합원들이 IMF 풍랑을 맞았다면 지금 솔직히 KT 직권 반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맘해도 3대는 간다고, 유목상 집행부 시절의 투쟁력과 활동력으로 그나마 지금껏 버텨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영희압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한 일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고자는 지체식 위원장과 유현용 조합처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헌신하다 해고되는 것은 자랑스런 투쟁을 영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사후에 해고한 노동자(해고자)를 노동조합이 해고하겠다는 것은 대명천지 수 돼지가 웃을 일입니다.

해고자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다. 집행부직입니다.

4969	해고자 지원책 적용 위한 결의문 모으는 것... →노조간부들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2006-03-21	169
		그루	2006-03-21	130

강제  
19-2  
토론  
3강

인쇄

- 열린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토론마당
- 조합원경조사



주요일정

2024년 12월 17일



토론마당

2024년 12월 17일



설문조사

2024년 12월 17일

**열린게시판**

제목

KT해고자라는 신분

작성자

나도향

E-MAIL

1. 조합원이지만 조합이 지시하는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2. 분열책동, 집행부 흔들기가 그들의 업무입니다.
3. 여기저기 노동조합 총집만 내고다닙니다.  
-어용노조라 떠들면서 조합원이 주는 희생자구제기금은 꼬
4. 폭적투쟁도 하지 않습니다.  
-KT분당본사앞에 가보십시오. 찬막이 있는지.
5. 조합이 복직을 떠내면 서로 안할려고 난리를 칩니다.
6. 10여년을 놓고 먹었습니다.
7. 무서워서 파업도 못한놈들이 파업하러 지랄입니다.
8. 징계받을까봐 안에서는 투쟁도 하지않습니다.  
-지들이 말하는 KT노조가 어용이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도 않습니다.
8. 밖에 쓰다니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벤트성 투쟁들 좋  
-좌파노동기자끼고 하는 그런투쟁을 좋아하지요  
-기자갈지않은 좌파기자들은 그들의 거짓선전을 잘 다루어  
-강화상같은 강화나리들 그들의 심체를 한번 다루어 주시죠
9. 2년10개월은 콧배기 안보이다가 선거때만 되면 발광을
10. 지 노동조합 제명하라고 요구 허다가 이번엔 지들이 끌고
11. 민주노동에서 단식투쟁한다 지랄입니다.제발 KT로 가라  
-지들 알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남들앞에서 보여주는 쇼는 시요.
12. 현수막 걸돈이 없다고 양말을 꿇고 다녔습니다.
13. KT조합원이 지급하는 희생자구제기금에는 이런것들이 다.  
-임금 : 해고원시정부터 송금 및 효봉산정을 다해 줍니다.  
생일/근로자의날/노동조합창립일/회사창립일/학자금/식대/  
허기휴가보너스/상여금 650~ 850%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것을 조합비에서 지급합니다.  
여름철 하기 휴양소도 제공됩니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을 떠나면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공물 그대로 산정해서 노동조합이 지급합니다.

n 3

3

나도향